

1

생산지원(작목반)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단체명만 변경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므로,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한 참여 횟수를 적용합니다.
- 이는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되기 전 중도에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,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다만, 구성원이 70% 이상 변경된 경우*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.
- * ‘(신규 농가 수/최종 농가 수)×100%’로 계산한 결과가 70% 이상이어야 하고, 이전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(타 단체 소속이었던 경우도 포함)가 이전과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농가로 보지 않음

2

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동일한 농산물(품종)의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고 1회차로 인정합니다.
- 다만, 품목,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의 단순 추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단, 품목변경, 계약상대 변경 시에는 계약재배 활성화 실적이 있더라도 2회 추가 지원은 불가

3

계약재배 농산물의 종류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계약재배 농산물(품종 기준)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.
- 농산물의 종류가 ‘추가’되는 경우에도 1회차로 인정하되, 다만 이전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을 종료*합니다.
- * 이후에는 이전 종류 농산물에 대한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동 사업 지원액(거래금액의 1/3 미만)을 산출해야 함

- 단, 품목변경, 계약상대 변경 시에는 계약재배 활성화 실적이 있더라도 2회 추가 지원은 불가
- 또한,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라도 '스마트팜' 도입 등 영농형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.

4

사업 최대 참여횟수는 얼마까지 인가요?

- 계약재배 활성화, 계약재배 품목변경, 상대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 변경 등을 합하여 **최대 8회**까지만 지원가능
- 예시) B생산자단체, 감자로 3회지원(계약재배 활성화시 2회추가 가능) → 식품기업자격으로 품목변경(양파)하여 이용지원 신청(최대 3회지원, 계약재배 활성화 불인정) => **총 최대 5회+ 3회 = 8회** 까지만 지원가능
 - * 참고) 농협이나 6차산업인증자 등은 생산자단체이기도하면서 식품기업이기도 함
- 계약재배 품목변경, 상대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·외식기업 변경시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(Q&A 2~3번 참고)
- 단, 품목변경, 계약상대 변경 시에는 계약재배 활성화 실적이 있더라도 2회 추가 지원은 불가
- 사업의 기본 최대 참여횟수는 3회이나, 계약재배 활성화 생산자단체/식품·외식기업에 한해 2회 추가참여 가능
- 계약재배 활성화란 1회차 대비 3회차의 계약재배 거래금액 또는 물량이 30%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함

5

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?

-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.
-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~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

가능,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

6

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?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?

-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- 내용물의 모양, 크기 등의 다양화,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
- 신제품 개발 여부 확인은 해당 사업기간에 신고된 신규 품목제조보고로 확인
 - 단, 단순 용량변경, 배합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품목제조보고는 인정불가

7

농산물 작황 부진,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,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?

-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,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종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-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(피해량, 피해면적)이나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,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제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8

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?

-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,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절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.
 -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,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

- 계약재배지 증빙서류는 **농가명단에 등록된 생산자의 계약재배지가 명시된 서류**이면 가능합니다.
 - (예시) 계약재배지가 명시된 표준계약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경작사실확인서, 자조금납부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
- **2026년부터 도입된 표준계약서 사용시, 계약서 제 2조에 계약재배지 및 면적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재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혜택 부여**
 - 만약 계약재배지 및 생산자가 다수일 경우 [별첨1] 재배지 및 생산자목록을 작성해야만 계약재배지 증빙서류 면제 혜택 부여
 -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: aT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정보서비스(<https://cf.kafb2b.or.kr/>)
→ 고객마당 → 자료실 →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 표준계약서

- 임차는 **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·보관·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공동시설이나 장비만 가능**
- 공동시설 이더라도 자산성항목의 임차후 우회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
 - 사업 심사시, 자산성 항목일 경우 구매견적서 제출하여 임차의 적정성을 따진 후 사업 수행가능
 - ex) 공동시설장비이지만, 맞춤제작으로 설치 후 타 사용자에게 재임대가 불가한 장비불가 (ex) 계근대, 식품기업 맞춤 시설장비 등)
- 저온/냉동창고 임차시 계약재배 물량 대비 적절한 평수로 임차
 - 계약재배 물량에 비해 현저히 넓은 평수를 임차할 경우 지원불가